

## ● 심판·조정 수속에 대하여

### Q1 가정법원에 청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청구서·신청서, 수수료, 우표 등 외에, 정보 제공 수속에 따라 연금사무소,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 등에서 교부된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이혼 전 청구·신청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일이 청구일·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이혼 후 청구·신청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일이 이혼 후의 것)가 필요합니다. 연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연금 분할 청구 장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에 기술하는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등은...' 난에 기재된 각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청구서·신청서 용지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Q2 청구·신청은 어느 가정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되지만, 두 경우 모두 청구인·신청인과 상대방이 합의해서 정한 가정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 Q3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A 연금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Q5 참조)  
따라서,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도 원칙적으로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 심판·조정 후의 수속에 대하여

### Q4 연금 분할 청구 수속이란 어떤 건가요?

A 당사자 간에 합의한 분할 비율 등에 대해 연금 분할을 청구한다는 사실 및 합의한 분할 비율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 등이 되었거나 재판 수속에 의해 분할 비율이 정해진 후, 실제로 이혼 시의 연금 분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사무소나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 등에서 연금 분할 청구 수속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수속에 대해서는 가까운 연금사무소나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으로 문의하십시오.

### Q5 연금 분할 청구 수속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연금 분할 청구에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정하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것이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날 이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연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심판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이혼 시의 연금 분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심판이 확정되는 등의 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분할 청구 수속(→Q4 참조)을 해야 합니다.

### Q6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A 연금 분할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 중 가정법원에서 교부되는 것은 아래의 것들입니다.(가정법원에서 교부되는 이들 자료의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 심판(판결)의 경우--심판(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 및 확정 증명서  
◆ 조정(화해)의 경우--조정(화해) 조서 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Q5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등을 청구한 후 분할 비율을 정하는 심판 확정 등까지의 사이에 이혼을 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청구일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난의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등은...' 난에 기재된 각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이 리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처

#### ●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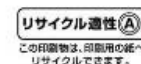
- 후생연금의 기간에 대하여**
  - 전국의 연금사무소
  - 전화 문의는 '연금 다이얼'(TEL: 0570-05-1165)
- 국가공무원의 기간에 대하여**
  - <국가공무원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그 배우자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각 부처의 공제조합
  - <과거 조합원 및 그 배우자 등>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연금상담실(TEL: 03-3265-8141(대표))
- 지방공무원의 기간에 대하여**
  - 현재 소속해 있는 공제조합 또는 과거에 소속했던 공제조합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기간에 대하여**
  -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공제사업본부 홍보상담센터 상담실(TEL: 03-3813-5321(대표))

※ 상기 이외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교부되는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에도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심판·조정·인사 소송에 관한 수속의 상세 내용은... 가까운 가정법원

◆ 법원 웹사이트 안내  
<http://www.courts.go.jp/>  
裁判所 검색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 안내  
<http://www.houterasu.or.jp/>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는  
0570-078374



# 알고 계십니까?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에서의 가정법원의 수속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에서 가정법원에는 이혼한 당사자 간에 분할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에 분할 비율을 정하기 위한 수속이 있습니다.





## 연금 분할 제도에 대하여...

'합의 분할'과 '3호 분할'의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합의 분할' (이혼 시의 연금 분할 제도-2007년 4월 시행)

'합의 분할'은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 수속에 의해 분할 비율을 정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연금 분할 청구에 의해 혼인 기간 중<sup>(※1)</sup>에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대응하는 후생연금을 당사자 간에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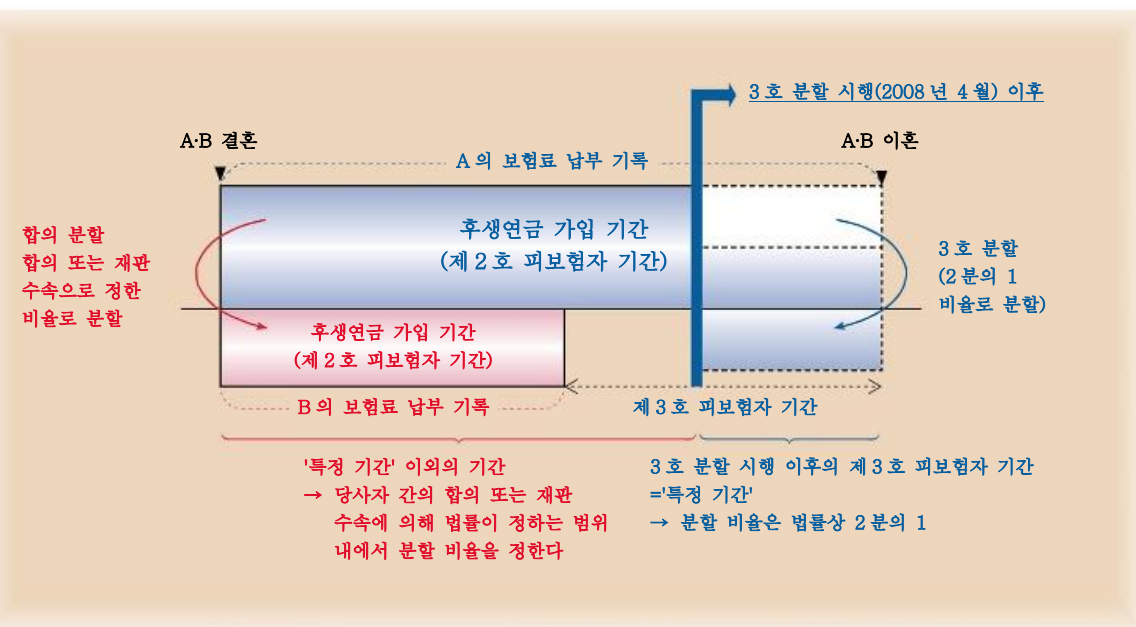
- ※1.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분도 대상이 되지만, 그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피부양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제 3호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있던 기간(제 3호 피보험자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 ※2. 구체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 기록 등(연금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분할하고, 이혼을 한 당사자는 각각 분할 후의 기록에 기초하여 연금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3호 분할' (이혼 시 제 3호 피보험자 기간의 연금 분할 제도-2008년 4월 시행)

'3호 분할'은 2008년 4월 1일 이후의 제 3호 피보험자 기간(특정 기간)에 대해, 이혼을 한 경우에 제 3호 피보험자였던 분의 연금 분할 청구에 의해 제 2호 피보험자의 후생연금을 2분의 1로 분할<sup>(※3)</sup>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3. 분할의 구체적 내용이나 효과는 '합의 분할'과 동일합니다.(※2 참조)

#### 【연금 분할 제도의 이미지 그림(부부 A·B의 경우)】



## 연금 분할 제도와 가정법원의 수속에 대하여... '합의 분할' 제도만 재판 수속의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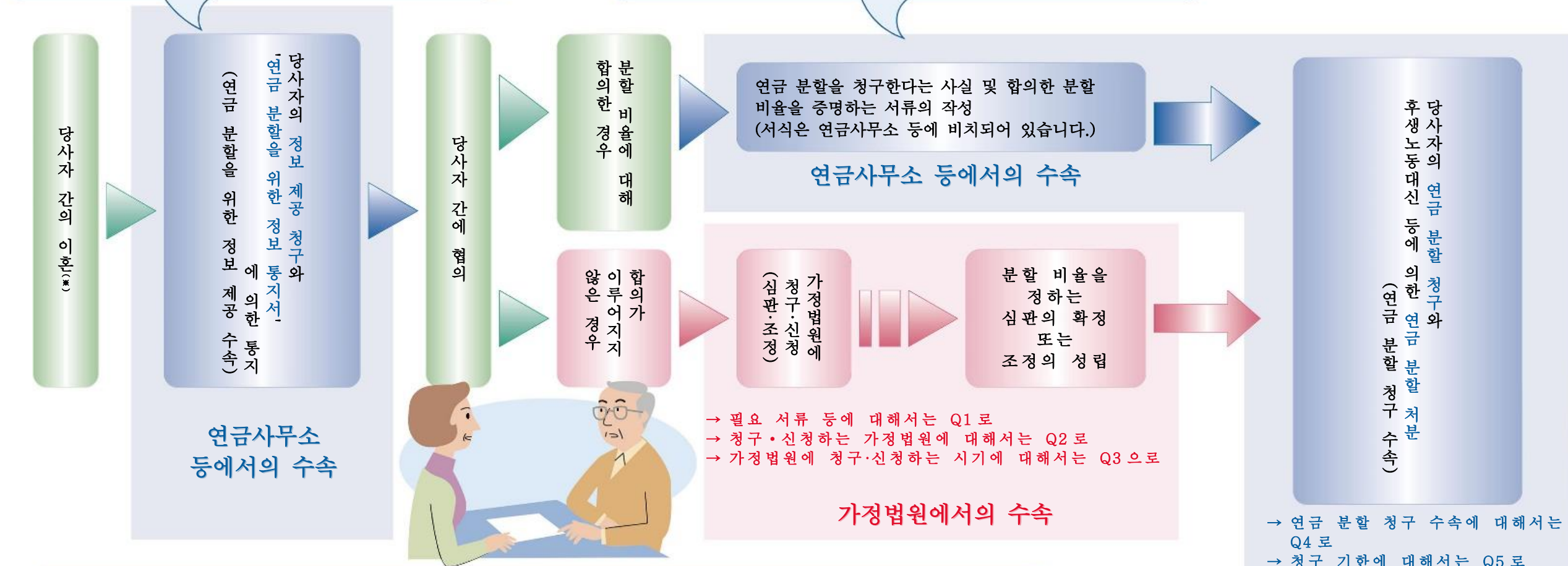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합의 분할'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합의에 의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의 수속(심판 또는 조정)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3호 분할' 제도는 제 3호 피보험자였던 분의 연금 분할 청구 수속에 의해서만 2008년 4월 1일 이후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자동으로 2분의 1 비율로 분할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합의 분할'의 기본적인 수속의 흐름... 재판 수속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연금 분할 제도를 이용할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 전 또는 이혼 후에 가까운 연금사무소나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 등에서 연금 분할을 위해 필요한 정보(정할 수 있는 분할 비율의 범위 등)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이후에 기술하는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등은...' 난에 기재된 각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당사자 간에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연금 분할을 청구한다는 사실 및 합의한 분할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연금사무소나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 등에서 연금 분할 청구 수속(→Q4 참조)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증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합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므로써 합의한 분할 비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연금사무소나 각 공제조합 또는 사학사업단 등에서 연금 분할 청구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후에 기술하는 '연금 분할 제도 등에 대한 문의 및 상담 등은...' 난에 기재된 각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이혼 시의 연금 분할 제도는 이혼 전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이혼 조정에서의 부수 사항이나 이혼 소송(인사 소송)에서의 부대 처분으로서 이들 재판 수속 중에 분할 비율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 소송 수속에 대해서는 리플릿 '알고 계십니까? 인사 소송'도 참고하십시오.

→ 연금 분할 청구 수속에 대해서는 Q4로  
→ 청구 기한에 대해서는 Q5로  
→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Q6으로

연금사무소 등에서의 수속